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4. 24.(월)

한미,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 노력에 박차를 가하다

- 한미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지원해 온 ‘심현섭’을 동시 독자제재 대상 지정
 -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수익 차단을 위한 공조 성과

우리 정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해 온 북한 국적 개인 ‘심현섭’을 4.24.(월)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심현섭’에 대한 제재 지정은 사이버 분야에서 한미가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하는 첫 사례로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에 기반해 이루어진 조치이다.

‘심현섭’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광선은행 소속으로, 차명계정 생성,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하였다. 특히,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여 해외에 불법 체류하면서 신분을 위장하여 활동하는 북한 IT 인력이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포함한 수백만 불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과 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에 관여하였다.

※ 조선광선은행은 2016.3.2.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으로 지정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서, 이번 제재 조치로 우리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개인 36명과 기관 41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된다.

한미는 그간 3차례 개최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협의 등을 바탕으로,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동결·압수함으로써 관련 피해를 줄여왔다. 또한, 민간 분야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 IT 인력의 차명계정을 상당 부분 차단하고 이들의 불법 수익 자금 일부를 회수함으로써 관련 활동을 위축시키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 사이버 활동을 비롯한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 및 민간 분야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끝.

담당 부서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북핵정책과	책임자	과 장	채경훈 (02-2100-8062)
		담당자	사무관	김지은 (02-2100-7878)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책임자	과 장	이준범 (044-215-4750)
		담당자	사무관	임순목 (044-215-475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책임자	실 장	성기철 (02-2100-1720)
		담당자	사무관	김상협 (02-2100-1736)